

광명시 직장방위협의회 운영 규정

제정	1996. 10. 19	훈령	제166호
개정	1998. 10. 2	훈령	제179호(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규정)
	2004. 9. 24	훈령	제244호(법제사무처리규정)
	2008. 6. 16	훈령	제273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)
	2010. 12. 15	훈령	제297호(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
일부개정	2018. 7. 31	훈령	제399호(훈령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훈령)
일부개정	2018. 9. 4	훈령	제400호(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

제1조(목적) 「통합방위지침」(대통령훈령 제28호) 제8조 및 동세부시행규칙 제 9조에 의하여 국가보안목표시설인 광명시청 직장방위에 관한 업무를 협의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광명시직장방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 6. 16>

제2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
1. 직장방위대책과 지원계획의 심의·결정
2. 직장예비군의 효율적 운용과 육성에 관한 업무 심의·결정
3.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의 조정
4. 직장방호에 관한 군·관 및 각 기관에서 제의한 안건의 심의·결정

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98. 10. 2>

② 의장은 시장이,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, 위원은 국장 5인이 된다. <개정 98. 10. 2, 2004. 9. 24>

제4조(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) ① 의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.

<개정 2018. 7. 31>

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의장의 명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간사)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며 협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04. 9. 24, 2010. 12. 15, 2018. 9. 4>

1. 정기 또는 임시회의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하고, 토의 및 의결사항에 대한 기록유지
2. 직장방위훈련과 직장예비군·민방위대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

3. 전·평시 적의 침투 및 도발 등 적의 침투로 인한 작전수행시 직장 예비
군 및 민방위대 지원에 관한 업무

4. 청원경찰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

제6조(회의) ① 협의회는 의장 주재하에 정기(분기1회) 또는 수시(필요시)로 개
최한다.

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
때 개최한다.

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
으로 의결한다.

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.

⑤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시장의 재결로서 효력을 가진다.

제7조(지원)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에 관한 업무는 그 기능과 관련되는
각 실·과에서 지원계획을 수립 지원한다. <개정 2004. 9. 24, 2010. 12. 15>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8. 10. 2 훈령 제179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04. 9. 24 훈령 제244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08. 6. 16 훈령 제273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12. 15 훈령 제297호,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훈령의 개정) ① 부터 ⑪ 까지 생략

⑫ 광명시 직장방위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담당관·과”를 “실·과”로 한다.

⑬ 부터 ⑳ 까지 생략

부칙 <2018. 7. 31 훈령 제399호, 훈령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훈령>
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18. 9. 4 훈령 제400호,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부터 ⑨ 까지 생략

⑩ 광명시 직장방위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자치행정과장”을 “총무과장”으로 한다.

⑪ 부터 ⑫ 까지 생략